

콜롬비아 통신 규제정책 검토 및 시사점

■ 김성웅* · 전영균**

최근 OECD의 외연 확대 전략과 맞물려, 콜롬비아의 정책 및 규제체계의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이 OECD 가입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기관, 규제체제, 경쟁정책 및 주파수 정책, 시장진입 및 소비자 보호 정책 등 통신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시장기반 주파수 할당, 외자제한 철폐, 소비자 이익 및 권한 강화 등의 정책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규제기관의 독립성 결여, 정부의 지분 보유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OECD 가입을 위하여 통신체계 전반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콜롬비아 통신정책에 대한 검토 내용과 평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우리의 통신정책을 재점검하고 정책 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콜롬비아의 가입 절차 및 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검토 작업을 살펴보고, OECD가 제시한 콜롬비아 규제 개혁에 대한 권고사항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가 고려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본다.

목 차

- I. 서 론 / 26
- II. 콜롬비아 통신분야 현황 및 OECD 가입 검토 / 27
 - 1. 콜롬비아 통신분야 현황 / 27
 - 2. OECD의 가입심사 검토 시스템 및 정책개선 / 32
- III. 콜롬비아 통신 규제정책 검토 / 35
 - 1. 통신 규제체제 및 규제기관 / 35
 - 2. 규제 정책도구 / 43
 - 3. 경쟁정책 / 50

- 4. 인프라 구축 / 50
- 5. 주파수 정책 / 53
- 6. 보편적서비스 / 56
- 7. 외국인 투자 및 정부의 지분 보유 / 57
- 8. 소비자 보호 및 권한 강화 / 58
- 9. 기타 정책이슈 / 60
- IV. 콜롬비아 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OECD 평가 / 61
 - 1. 콜롬비아 통신 발전 및 정책 평가 / 61
 - 2. 콜롬비아 통신규제에 대한 OECD의 권고사항 / 64
- V. 결 론: 정책적 시사점 / 67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043)531-4436, woongnice@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43)531-4183, ygjeon@kisdi.re.kr

I. 서 론

OECD는 선진경제권 국가의 지표이며 이들의 모임으로 대변된다. 그러나, 2000년 대 들어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며 선진국은 경제성장이 주춤한 반면 신흥개도국들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OECD의 위상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OECD는 전략적 차원에서 외연확대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 강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OECD는 2007년 5월 각료이사회 결의를 통해 세계화 시대 경제 발전 및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회원국의 OECD 참여를 유도하는 글로벌 관계전략(Global Relations Strategy)을 수립하였다. 동 전략은 OECD의 경제 지도를 넓히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특히, 중국, 인도 등 5개국을 주요 파트너 국가로 선정하고 OECD와의 관계 강화 및 글로벌협력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동 전략에 참여 계획(Participation Plan)¹⁾을 더하여 초청국, 참가국 등 주요 전략적 관심 지역에 있는 비회원 국가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힘쓰고 있다.

비회원국가 중 콜롬비아는 가입심사 대상국이자 참가국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OECD 가입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의 OECD 가입 심사는 다양한 전문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통신분야 전문위원회인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ommittee for Digital Economy Policy, 이하 CDEP)²⁾는 2013년 12월부터 콜롬비아의 통신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유무선 및 인터넷 시장의 경쟁 현황, 규제관련 법규, 규제기관의 정착 및 제도화, 외국인 투자 제한, 보편적 서비스 등 통신 분야 규제정책을 상세히 점검하고 OECD에 부합하는 정책목적을 추구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현재 가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OECD

1) 세부내용 본문 8페이지 참조.

2) OECD는 2013년 12월 66차 정례회의에서 통신 분야 해당 분과위원회의 구조 개혁을 단행, 기존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에서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존 4개 산하작업반(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작업반(WPCISP), 정보경제작업반(WPIE), 정보보호작업반(WPISP), 정보사회지표작업반(WPIIS))을 3개 작업반(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작업반(WPCISP), 디지털경제정보보호및프라이버시작업반(WPSPDE), 디지털경제측정및분석작업반(WPMADE))으로 재구성하였음.

가입 희망하는 국가³⁾중 가장 빠른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다.

OECD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 TC)에서도 콜롬비아의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무역장벽에 대한 검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비차별 원칙의 준수와 시장개방 관련 조치에 대한 점검이 핵심이며, 통신 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콜롬비아와 FTA 협상을 체결하고 2013년 2월 서명을 완료⁴⁾하여 무역자유화 개선 및 교역관계 확대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⁵⁾ 이와 관련 콜롬비아의 OECD 가입이 가지는 의의를 모색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OECD에서의 콜롬비아 가입심사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콜롬비아의 통신분야 주요 규제정책 및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콜롬비아의 통신 동향 및 OECD 가입 절차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체제, 규제기관, 주파수, 경쟁, 융합, 외자제한, 보편적 서비스 등 통신 정책 주요 분야에 대한 OECD의 검토작업을 분석함으로써 35번째 가입국이 유력한 콜롬비아 통신정책을 이해하고 FTA 체결상대국으로서 우리나라에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콜롬비아 통신분야 현황 및 OECD 가입 검토

1. 콜롬비아 통신분야 현황

콜롬비아 통신시장은 2000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그 규모가 커져 2012년에는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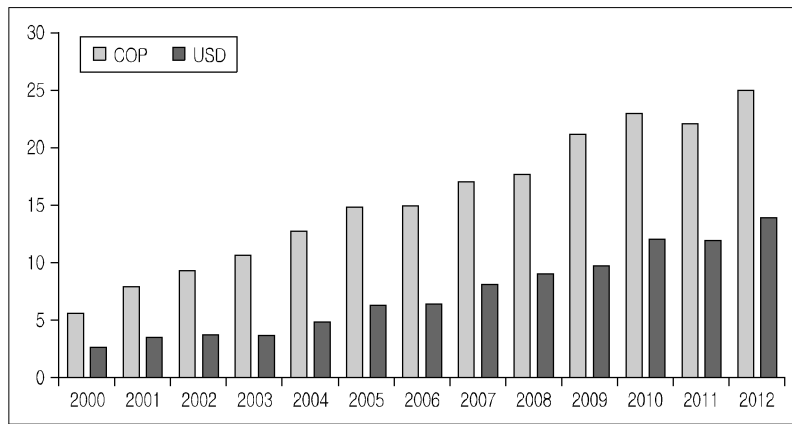
3) 최근 러시아, 라트비아, 콜롬비아가 가입을 희망하여 러시아는 2008년부터, 콜롬비아와 라트비아는 2013년부터 CDEP위원회에서 가입심사를 검토받고 있음.

4) 우리나라는 2014. 4.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함. 콜롬비아의 비준 절차는 상원-하원-헌법재판소를 거치며, 2013. 11. 13 상원 절차를 완료한 후 2014년 6월 하원에서 비준에 실패하여 다시 상원에 계류 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 KOTRA(2014) 참조.

5) 우리나라는 콜롬비아의 FTA 체결대상국 중 유일한 아시아 국가임. FTA 홈페이지.

신 분야 매출이 13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0년의 26억 달러에 비하여 약 6배 증가한 수치이며 중남미에서 브라질, 베네수엘라에 이은 3번째로 큰 시장규모이다. OECD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으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포르투갈이나 벨기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⁶⁾ 또한 콜롬비아는 전체 매출 중 모바일 서비스가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1] 콜롬비아 통신 분야 매출 동향(2000년~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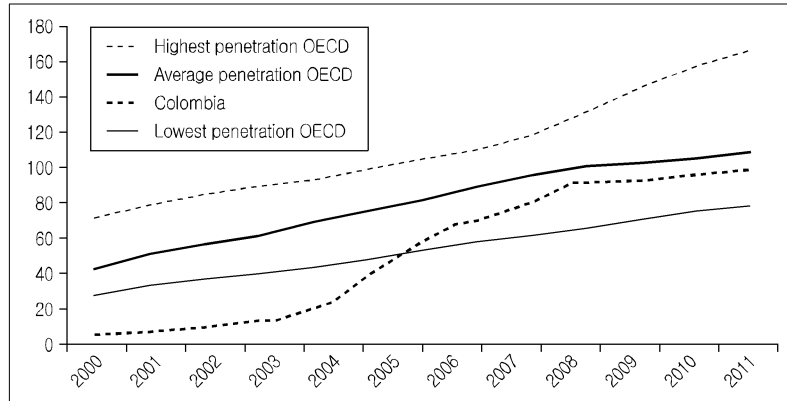
자료: OECD(2013a)

유선통신 보급률은 2011년 기준 100명당 15.19명(2013년 2분기 기준 13.5명)으로 OECD 평균인 41.47명(2011년 기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유선통신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콜롬비아도 매년 유선통신 가입자의 비율이 줄고 있다. 콜롬비아 유선통신의 특징은 전체 보급률은 낮지만 몇몇 주요도시에서는 OECD와 비슷한 보급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고타는 33%, 멘델린은 31%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유선통신가입자 중 55%가 콜롬비아의 상위 3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⁷⁾

6) OECD(2013a), pp.5~6.

7) OECD(2013a), pp.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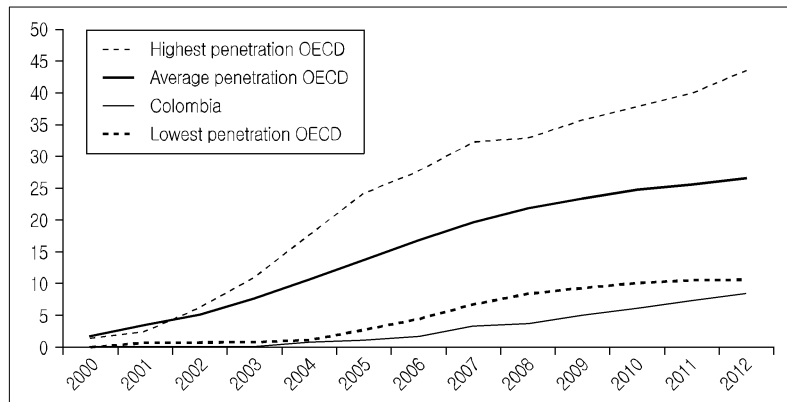
[그림 2] 콜롬비아 무선통신 가입자 수와 OECD 국가들과의 비교(2000년~2012년)



자료: OECD(2013a)

무선통신 보급률은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100명당 약 99명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콜롬비아가 지역별 복점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던 2003년까지는 성장이 저조했으나, 이후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⁸⁾

[그림 3] 콜롬비아 인터넷 가입자 수와 OECD 국가들과의 비교(2000년~2012년)



자료: OECD(2013a)

8) OECD(2013a), p.8.

2012년 기준 콜롬비아의 인터넷 보급률은 매우 낮은 8%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6.3% 보다 많이 밀돌뿐 아니라, OECD에서 가장 낮은 인터넷 보급률을 가진 터키(10.4%)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콜롬비아는 낮은 인터넷 보급률과 더불어 시장 내 불충분한 경쟁, 미비한 인프라 구축 정책적 지원 등으로 인해 차세대접속 네트워크로의 전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⁹⁾

한편, 콜롬비아는 1994년 시장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 완료하였다. 이는 통신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1993년 26개이던 통신사가 1999년에는 40개로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122개의 사업자가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시장이 되었다.¹⁰⁾

〈표 1〉 콜롬비아 사업자 수 및 제공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업자 수
PSTN	21
Cable	41
Fibre	20
Fixed wireless	30
Cellular mobile	4
MVNOs ¹²⁾	6

자료: OECD(2013a)

콜롬비아의 유선통신 주요사업자는 ETB, Telefónica, UNE-EPM, América Móvil¹¹⁾가 있으며 각각 25.33%, 20.29%, 18.57%, 15.66%의 고른 가입자 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들 상위 4개 사업자가 약 8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 콜롬비아 대부분의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구조이다.¹²⁾

9) OECD(2013a), p.6.

10) OECD(2013a), p.9.

11) 콜롬비아의 Claro Colombia와 Telmex Colombia S. A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무선통신 주요사업자의 가입자 수 비중은 América Móvil(59.19%), Telefónica(24.86), Tigo(14.95), UNE-EPM(0.8)이다. 또한 이들 무선통신 주요사업자의 매출액 비중은 각각 61.83%, 25.19%, 12.61%, 0.1%로 나타났다. 무선통신의 경우 유선통신과는 다르게 1위 사업자가 약 60%에 가까운 가입자 수와 매출액 비중을 갖고 있는 시장지배 구조이다.¹³⁾

인터넷 주요사업자의 가입자 수 비중은 América Móvil(30.56%), UNE-EPM(26.89), Telefónica(18.54), ETB(12.94)이며, 1,2위 사업자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형태이다.¹⁴⁾

<표 2> 콜롬비아 통신시장 6대 통신 그룹/사업자별 점유율(2013. 2분기)

사업자	구분	유선전화(%)	모바일(%)	유료TV(%)	유선인터넷(%)	시장점유율 합계(%)
America Movil	가입자	15.66	59.19	44.48	30.56	
	매출		61.83	35.65		40
Telefonica	가입자	20.29	24.86	6.43	18.54	
	매출		25.19	5.90		16.29
Tigo	가입자		14.95			
	매출		12.61			6.14
UNE-EPM	가입자	18.57	0.80	23.91	26.89	
	매출		0.10	20.46		7.45
ETB	가입자	25.33			12.94	
	매출					5.38
DirecTV	가입자			17.38		
	매출			32.80		1.82

자료: OECD(2013a)

12) OECD(2013a), p.8.

13) OECD(2013a), p.8.

14) OECD(2013a), p.8.

2. OECD의 가입심사 검토 시스템 및 정책개선

OECD 글로벌 관계전략 및 참여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비회원국의 참여 형태 및 파트너십을 보면 최근 OECD의 외연 확대 이슈가 매우 중대한 과제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핵심파트너(Key Partner)로 선정한 국가들¹⁵⁾ 대부분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구매력 기준 세계경제의 1/6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¹⁶⁾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OECD의 몸집 키우기 전략은 난항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에 OECD는 최근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 및 동남아 국가로 그 대상을 분산하여 넓히고 있으며, 초청국, 참가국 등으로 전략적 비회원국을 구분하여 OECD와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장관회의에 비회원국을 발표자, 참가자로 초청하여 OECD에의 참여를 유인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¹⁷⁾

〈표 3〉 비회원국의 OECD 참여형태 및 현재 파트너십 상황

참여형태	내용	해당국
핵심 파트너국 (key partner)	이사회가 지정한 주요 파트너로, 초청자, 참가자로 참여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초청국 (invitees)	기구 재량에 의해 개별적인 회의에 참여하며, 이전의 Ad Hoc 옵저버의 지위와 유사, 의사결정에 참여 불가	아르헨티나, 페루, 우루과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참가국 (participants)	위원회 업무에의 실질적인 기여 의사 및 능력을 보여주는 관심 정도, 인터넷경제 정책을 개발하는 정도, 참여를 통해 달성되는 상호혜택	이집트, 라트비아, 러시아, 싱가포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준회원 (associates)	상기 요건 외에 OECD 대표 문건(권고안, 선언문)의 이행 및 준수 고려	없음

자료: OECD(2014h) 재정리

15) OECD는 2011년까지 5개 핵심파트너국가를 관계강화국(Enhanced Engagement countries, EE5)으로 분류하였음.

16) 아시아투데이(2014).

17) OECD(2014g).

OECD의 가입 검토는 회원국 법률 문서가 OECD 관련문서 즉 권고안, 선언문 등 OECD 규범문서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현재 단계는 CDEP 위원회에서의 검토 및 토의과정이다.

가입 검토는 1) 가입후보국의 OECD 정보통신정책 문건 관련 자국입장을 밝히는 ‘초기 각서’ 제출, 2) 관련정책 및 이행수준을 조사하는 사무국의 ‘실사보고서’, 3) CDEP-작업반에서의 검토를 거쳐, 4) 이사회에 전달하는 CDEP의 ‘공식의견’ 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콜롬비아는 2013년 CDEP위원회 참가국이 될 것을 공식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우선 2013년 4월 65차 정례회의에서 콜롬비아 통신규제위원회가 디지털 전략 및 이행활동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스페인, 체코 등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콜롬비아의 요청을 수용하였으며, 미국 등은 콜롬비아의 CDEP 주요 문건 및 원칙 수용을 환영하였고, 특히, EU는 서울선언문의 맥락적 중요성과 권고안의 이행 등 핵심적인 문건 준수를 강조하였다. 회원국들은 콜롬비아의 요청을 수용하고, 향후 더 진전된 노력과 참여를 기대하였다. 2013년 12월 66차 정례회의에서는 콜롬비아의 통신정책 전반에 대한 발표와 회원국들의 상호검토가 진행되었다. 회원국과 콜롬비아 양측 모두 콜롬비아의 정책적 노력 및 개선과제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콜롬비아는 정책목표 달성 및 OECD의 권고안 이행에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후 콜롬비아는 2014년 2월 OECD 가입을 위한 로드맵에 일치하는 초기각서¹⁸⁾를 제출하였고, 동 각서에서 콜롬비아는 디지털경제정책 분야의 OECD의 법률 문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OECD의 디지털경제 분야 12개의 권고안 및 4개의 선언문에 대해 적극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¹⁹⁾ 2014년 12월 정례회의에서는 2016년 디지털경제 장관회의(2016 CDEP Ministerial on Digital Economy)에 상기한 비회원국들을 발표자, 참가자, 초청대상자로 초청하여 이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을 승인하였다. 특히, 최근 OECD의 전략적 관심 지역인 남미 지역 및 동남아 국가들을 사무국 제안 및 회원국 추천으로 추가로 초청하기로 하였다.²⁰⁾

18) 초기각서는 가입후보국과의 기술적 논의를 위한 출발점을 의미함. OECD(2014c), p.2.

19) 라트비아도 동일한 문건에 대해 수용 입장을 표명. OECD(2014b).

〈표 4〉 콜롬비아의 초기각서 내용

	구분	콜롬비아 입장
권고안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2012)	수용
	온라인 아동보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2011)	수용
	인터넷정책결정원칙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2011)	수용
	ICT 및 환경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2010)	수용
	공공분야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접근 개선을 위한 이사회 권고안(2008)	수용
	중요정보인프라 보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2008)	수용
	전자 인증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2007)	수용
	프라이버시 보호법 집행의 국경간 협력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2007)	수용
	브로드밴드 발전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2003)	수용
	(정보보호 문화 지향)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2002)	수용
	암호 정책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수용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수용
선언문	인터넷경제의 미래를 위한 선언문(서울선언문, 2008)	수용
	전자상거래 인증에 관한 장관선언문(1998)	수용
	글로벌네트워크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선언문(1998)	수용
	국경간 정보의 흐름에 관한 선언문(1985)	수용

자료: OECD(2014c) 재정리

한편, 콜롬비아의 가입 및 통신 분야 검토와 관련, OECD 무역위원회(TC)에서도 심사가 진행중에 있다. 2013년 시작된 콜롬비아의 가입 검토 및 심사에서 콜롬비아의 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점검이 올해 11월 무역위원회 정례회의 의제 문건에 포함되었다. 투명성, 비차별, 불필요한 무역 제한 예방조치 등 효율적인 규제 원칙 중 통신 분야는 비차별 원칙과 관련하여 검토가 이뤄졌다. 통신분야 민영화와

20) OECD(2014g), pp.2~4.

외자제한 철폐, 정부의 사업자 지분 보유, 규제기관의 독립성, 시장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 및 문제가 제기되었다.²¹⁾ 또한 무역위원회에서는 금년 5월 시장 개방에 영향을 주는 규제 및 정책 발전에 대한 회원국들의 질의가 이뤄졌고, 11월 회의 의제에서 이에 대한 콜롬비아의 답변을 담은 경과보고가 마련되었다.²²⁾ 콜롬비아 정부는 답변서에서 올해 들어 통신분야에서 시행한 새로운 규제사항을 보고하였다. 모바일 시장에서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사업자 경쟁 유도를 위해 서비스와 기기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 기간 조항을 금지하였고,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비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분리 보고 및 의무 체계를 구축하였다.²³⁾

본 고에서 상세히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기한 콜롬비아의 OECD 가입심사 단계 중 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검토 절차이다. 통신분야 주요 정책 및 규제 상황을 살펴보고, 정책 발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OECD 회원국 수준으로 개선이 되었는지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회원국들에 가지는 의미를 찾고, OECD가 제안하는 권고사항을 통해 우리나라가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콜롬비아 통신 규제정책 검토²⁴⁾

1. 통신 규제체제 및 규제기관

(1) 규제체제의 변화

지금의 콜롬비아 통신 규제체제는 2009년 ICT법(ICT Law of 2009 또는 Law 1341 of 2009, 이하 2009 ICT법)에 의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9 ICT법으로 인해 콜롬비아의 통신 정책 및 규제의 틀이 마련되었고, ICT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체계가 제도화 되었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1) OECD(2014e), pp.52~53.

22) OECD(2014f).

23) OECD(2014f), pp.2~3.

24) 본 장은 2013. 12월 OECD 정례회의 문헌 및 논의 내용을 분석 및 재구성하였음.

<표 5> 2009 ICT법(Law 1341 of 2009)의 주요 특징 및 변화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일반적인 규제 틀 마련 및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CRC, MINTIC, SIC 등) 설립
- 정부의 역할 설정: 경쟁 보장, 이용자 권한 보호, 통신분야 투자 증진, 무선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등. 정부의 특수 의무로 네트워크의 상호접속 및 상호운용성 보장, 기본설비 접속 보장을 포함시킴
- 주파수 기획, 관리 및 통제를 위한 ANE 창설
- 공급자들에게 서비스 품질 수준 및 합리적인 수익을 설정하여 이용자 권한 보호를 위한 원칙 설정
- 통신규제위원회를 이전의 CRT에서 CRC로 변경하고, 사전 규제, 융합 관련 결정권 등 더 많은 권한을 부여
- 모든 서비스 공급자들에 적용가능한 규제를 위해 ‘통신사업자(communications provider)’의 개념 정립
- ICT 등록제를 구축하여, 주파수 사용 문제가 없는 한 등록만으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이런 측면에서 ICT법을 ‘융합법’으로 별칭)
- 모바일네트워크 사업자(MNO)를 위한 새로운 라이선스 체계 구축하여, 등록 후 주파수 사용 라이선스 획득하는 절차 도입.(과거에는 정부와 개별 계약(concession)을 맺어야 했음)

자료: OECD(2013a)

동 법의 주요 기본원칙은 ICT의 접근 및 활용 증진, 공정 경쟁 촉진, 인프라 및 희소 통신자원의 효율적 사용 보장, 이용자 권한 보호, 투자 장려, 기술 중립성 보장, ICT 접근 권한 확대,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정부의 ICT 활용 극대화 보장 등이다.

또한 ICT법은 다양한 규제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통신규제위원회(Comision de Regulacion de Comunicaciones, 이하 CRC)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였고, 주파수 문제를 위한 새로운 기관인 주파수관리국(Agencia Nacional de Espectro, 이하 ANE)을 창설하였다.²⁵⁾

ICT법의 구체적인 시행은 CRC와 정보통신기술부(Ministerio de Tecnologias de la Informacion y las Comunicaciones, 이하 MINTIC)가 공포하는 결의(resolution) 및 시행명령(decree)²⁶⁾에서 이뤄진다.²⁷⁾

25) OECD(2013a), p.25.

26) 모법률의 시행령 성격을 갖는다.

27) OECD(2013a), p.26.

<표 6> CRC(2009 ICT법)와 CRT(1994법, 1999시행명령)의 권한 비교

CRC(Law 1341 of 2009)	CRT(Law 142 of 1994, Decree 1130 of 1999)
시장실패 존재한다고 결정시 공급자에게 비대칭 법규 부과 가능	시장 지배의 남용 예방을 위한 조치 가능(단, 공공분야만 가능)
상호접속 및 기본설비에 대한 규제 가능(기본설비는 접속료를 포함한 네트워크 접속 요건의 규제를 포함)	상호접속 및 기본설비에 대한 규제 가능(그러나, 공공 서비스 공급자 이외의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도는 사실상 어려움)
서비스 품질 기준 마련 및 서비스 공급자 간 분쟁 해결	공공 설비에만 적용 가능(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는 제외) 모바일 사업자들에게는 초국가법에 소송제기가 필요
규제 업무 수행을 위해 통신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 요구 가능	정보 요구는 공공 설비에만 적용(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는 제외) 모바일 및 인터넷 사업자에 벌금 부과 불가

자료: OECD(2013a)

이처럼 2009년 ICT법은 제한 완화, 시장접근 개선, 규제기관 및 소비자 권한 강화 등 콜롬비아의 이전 통신규제 체제와 선을 긋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었다.

물론, 여전히 정부의 지분보유, 가격 규제, 번호이동성 제한 등 개선 사항이 남아있지만, 이전에 존재하던 외국인 투자 제한, 개별면허 계약(concession) 등 시장진입에 대한 제한 등을 철폐함으로써 선진국 경제협력기구인 OECD에 가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초석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표 7> 콜롬비아 통신 규제 개관 및 특징

분류		규제 요건	비고
시장 진입	기초설비 사업자	등록(roll-out 의무 없으나 품질 기준은 충족할 의무)	주파수 제한이 없으면 시장진입자수 제한 없음
	무선망 사업자	등록	
	MVNO	등록	
	ISP	등록	
	케이블TV	등록	

분류	규제 요건	비고
정부 지분보유	주요 도시의 유선망 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분보유 존재. 콜롬비아 정부의 콜롬비아 통신(30%), Interconexion Electrica, internexa(51%) 보유	
외자제한	제한 없음	
가격 통제	유선에서 무선 통화 규제 Claro의 모바일 발신 off-net charge 유선사업자에 가격상한 적용(60% 이상 시장점유)	
사업 회선 제한	없음	
상호접속 통제	규제	
시장 정의·분석·구제	SMP 보유한 사업자에 지배력 선언	
기본 설비	규정된 가격으로 기본 설비 접속 제공 의무	
주파수 할당	이중 라이선스 구조: MITIC은 통신, ANTV는 방송 주파수 할당(경매, beauty contest)	
인프라 공유	duct, pole	
번호 정책	모바일 분야만 번호 이동	
보편적 서비스	저소득 상위 1, 2위 계층은 유선전화 부가세 면제. 통신 사업자는 매출액 2.2% FONTIC에 납부 의무	

자료: OECD(2013a)

(2) 규제기관

콜롬비아는 통신 분야에 대해 직간접적인 책임을 갖는 다양한 기관이 있으며, 이는 2009 ICT법에 규정되어 있다. MINTIC과 국가기획조정국(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on, 이하 DNP)은 대통령 아래에 있지만, 전자는 부처이며 후자는 자문의 역할을 한다. MINTIC 아래에는 규제기관으로 CRC, 주파수 관리를 위한 조직인 ANE가 있으며,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별도의 정부 당국인 SIC(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가 존재한다.

1) MINTIC(정보통신기술부)

MINTIC은 통신 정책 및 ICT 산업 전반에 대한 책임부처이다. MINTIC 하위에 CRC와 ANE가 규제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MINTIC 장관은 CRC 이사회 구

성원이면서, 의장직을 맡는다. 1994년 이전까지는 통신부(MoT)가 통신분야 전반을 담당했으나, 1994년 일부 권한을 CRT로 이관하였고, 2009년 ICT법 이후 CRC가 통신분야 규제기능을 이어받았으며, 주파수관리를 ANE로 분리하였다. 또한 ICT 활용 증진을 위해 수요측면의 정책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 2009 ICT법을 통해 MoT가 MINTIC로 변경되었고, 인프라, 보편적접근, 전자정부, ICT 교육, 브로드밴드 채택, 신뢰 및 기술 이슈 등 포괄적인 범위를 맡게 되었다.

ICT 주무부처인 MINTIC의 대표 이니셔티브는 'Plan Vive Digital'이다. 인프라, 서비스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등 4가지 핵심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은 동 계획은 MINTIC이 추진하고 있는 기존 정책의 지속 및 진전을 담고 있으며, DNP가 수행하고 있다. 재원은 FONTIC(Fondo para las Tecnologías de Información y las Comunicaciones)이 제공한다. ICT 펀드인 FONTIC은 특수한 행정 조직으로 MINTIC과 별개의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림 4] Vive Digital 계획개념도



자료: MINTIC 홈페이지

MINTIC은 OECD 대부분 회원국들의 부처와 달리 정책입안 외에 사실상(de facto)의 규제권한을 갖고 있어 정책과 규제가 혼합된 특징을 띠고 있다. 특히, 사업자에 부과하는 벌금은 MINTIC만 권한을 갖고 있어 CRC의 독립성 결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낳고 있다.²⁸⁾

〈표 8〉 Vive Digital 계획의 주요 이니셔티브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Conectividad-Connectivity Program - 舊 공공기관 인터넷정보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광통신망 발전 계획(2013년 777개 지방자치제 연결 및 2014년까지 1,078개 지방자치제 연결 목표) • 농촌 정보화센터(예: Punto Vive Digital, Kiosco Vive Digital)
GEL, Gobierno en Línea - 전자정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에 콜롬비아 전자정부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온라인 서비스 제공
MiPyme Digital 중소기업 ICT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TIC과 Bancoldex의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ICT 활용 능력 지원(2013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17,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음)
Computadores Para Educar - 컴퓨터 활용 교육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TIC과 교육부의 협력으로 교육 기관에 컴퓨터 제공 및 교사들의 ICT 활용능력 훈련
Apps.co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니셔티브
FITI, Fortalecimiento de la Industria TI - 디지털산업 강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목적: 콜롬비아 IT 분야의 발전 • 디지털 인재: ICT 관련 교육 희망자에게 정부가 후원(2014년 4,661명의 학생 지원 예상) • iNNPulsa Tic: 콜롬비아 10대 ICT 신생기업 발굴을 위한 경합. 보상으로 기업가적 네트워킹 및 아르헨티나에서의 훈련 지원
Digital Content Program -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velabs: 디지털 콘텐츠(비디오 게임, 웹페이지 등) 개발을 위한 기업가 훈련 센터

28) OECD(2013a), pp.28~29.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I+D+I: Innovation Ecosystem Program - I+D+I 혁신 생태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TIC 및 COLCIENCIAS 공동 협력을 통한 전자정부 강화 및 국가 ICT 계획 확립을 위한 ICT(I+D+i) 혁신 체제 구축 • 프로그램: 정부의 정보인프라, 사이버 보안, e-헬스 등
Regional Vive Digital Vive Digital 지역단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롬비아 지역의 Vive Digital 이니셔티브 촉진: 지방자치제 및 지역의 ICT 발전을 위한 후원 프로그램
ICT Appropriation Program - ICT 활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문자화 프로그램 • 재택근무 촉진 이니셔티브

자료: OECD(2013a)

2) DNP(국가기획조정국)²⁹⁾

DNP는 MINTIC과 협력하여 보편적서비스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부처가 수행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DNP는 대통령에 직접 보고 의무를 갖는 정부의 자문기구이다. 국가의 발전 계획을 맡아 이행하며, 정부의 투자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다.

국장은 CRC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MINTIC을 포함하면 CRC 상임위원의 2/5가 정부에 속하게 되어 마찬가지로 CRC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3) CRC(통신규제위원회)³⁰⁾

CRC는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예방하는 경쟁 증진을 책임지고 있으며,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서비스 및 네트워크의 사전규제를 맡고 있다. 그러나 제재 권한이 미약해 규제조치와의 일치를 강제하는 규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CRC는 법규상 어느 정도의 예산 자율성을 갖고 있으나, 결국 부처의 결정에 예산 한도 제약이 있고 특히, CRC 이사회 의장이 MINTIC 장관인 이유로 실질적으로 MINTIC의 영향하에 놓여 있다.

29) OECD(2013a), pp.30~31.

30) OECD(2013a), pp.31~33.

CRC의 임무는 경쟁 증진, 시장지배력남용 방지, 서비스 품질 및 효율성 개선이며, 주요 기능은 기본설비의 접속, 상호접속, 사용의 기술 경제적 측면 규제 및 사업자간 분쟁해결 등이다. CRC의 임무는 2012년 CRC가 TV 네트워크 및 인프라 규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권한을 갖게 되면서 확대되었다. 그러나 집행권과 제재권한의 결여 및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 부과권으로 인해 규제기관으로서의 입지는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

CRC는 MINTIC의 아래에 있는 조직이며 경쟁기관에 보충적인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 CRT를 대체하여 규제권한을 확대한 정부 조직이다. 그러나 별도의 법적 지위 없이 이사회 구성의 혼합적 성격으로 인해 독립 규제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 CRC는 통신 정책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정책과 규제 기능이 혼합된 과도기적 성격의 규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CRC의 이사회 구성원 중 정부 부처 인사 2명을 제외한 3명의 상임위원은 연속성 보장을 위해 동시에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 후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4) ANE(국가주파수관리국)³¹⁾

ANE는 주파수 계획, 관리 및 통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CRC처럼 예산상 약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나, 이사회 구성상 부처의 영향에 놓여있다. 즉, CRC처럼 기술적, 행정적 자율성을 가진 행정 조직이나 MINTIC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다. ANE의 모든 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의 구성을 보면 MINTIC 장관 및 차관, FONTIC 수장 등 3명의 이사가 모두 정부 측이며, CRC 및 ANE 측 이사는 이사회의 투표권한이 없는 구성원에 불과하다.

주파수 관리통제 권한과 함께 주파수 규정 위한 및 오용에 대한 벌금부과 권한을 갖고 있으나, 주파수 사용 권한 부여는 MINTIC이 관장한다. 최근 융합 현상 가속화에 따라 2012년 기존의 CNTV(현 ANTV)가 갖고 있던 방송 주파수 사용에 대한 책임을 ANE가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TV 방송 라이선스, 감독 및 규제 권한은 여전히

31) OECD(2013a), p.34.

히 ANTV가 보유하고 있으며 주파수 라이선스 할당은 MINTIC이 갖고 있어 ANE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특히, 시장진입 관련 이슈는 규제 권한으로 장기적으로 CRC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 SIC(산업통상감독청)³²⁾

SIC는 경쟁 및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담당기관으로, 반독점 규제, 소비자 보호 및 경쟁 증진의 역할을 맡고 있다. 경쟁 담당기관으로서 반독점 조사 등 경쟁법을 집행하고, 소비자 보호 기관으로서 통신분야의 일반적이고 특수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집행하며, 데이터 보호 기관으로서 지적권 이슈를 담당하고 있다. 2009년 ICT법을 통해 기존에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권한을 SIC로 단일화하였다.³³⁾ SIC는 기업간 합병 분석시 CRC의 관련시장 분석 의견을 고려하며,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준다. 또한 MINTIC과 비교할 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경쟁 담당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향상 및 반경쟁 행위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SIC는 독립 규제기관이 아니며, 대통령이 SIC의 임면권을 갖고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2. 규제 정책도구

(1) 시장진입 및 라이선스 제도

2009년 ICT 법 승인으로 인해 통신분야 시장진입은 단순한 ‘등록(registration)’만을 요건으로 하게 되었다. 단,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서비스 제공시에는 MINTIC의 사전허가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사업자들은 신규 서비스 개시 또는 중단 시에 동변경사항을 통보만 하면 된다. 이처럼 등록제는 신속하고 부담이 없다는 장점으로 인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³⁴⁾

32) OECD(2013a), pp.35~36.

33) TV관련 소비자 이슈는 ANTV가 관장한다.

모든 서비스 사업자는 총 매출액 중 2.2%를 FONTIC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일종의 통선서비스 수수료의 성격을 띠며, 보편적서비스 확대 및 ICT 분야 발전 목적에 사용된다. 수수료율은 과거보다 낮아진 수준이나, 추가적으로 모바일 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자 보다 높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의 부담이 되고 있다.

주파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요건과 관련하여 모바일 부문은 경매절차를 통해서, 기타 주파수 사용은 심사 조건 충족 시 할당하는 절차를 통해서 부여되고 있다.³⁵⁾ 과거의 라이선스 제도는 정부와 사업자 간 공공입찰 절차를 통해 개별적인 계약(concession)을 통해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으나, 신규 제도는 계약이 아닌 행정법규에 의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전자는 문제 발생시 중재를 통해서 해결했으나, 후자는 법원의 판결 및 결정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한편, 콜롬비아의 라이선스 제도는 이중 체계를 갖고 있다. MINTIC이 통신서비스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ANTV가 방송서비스 운영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2012년 고유의 라이선스제를 만들어 융합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보완하였다.³⁶⁾

(2) 사전규제

2007년 CRT는 관련 시장 및 지배력 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권한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³⁷⁾ 이러한 규제 모델은 시장 분석 및 정의를 위한 절차 마련, 시장에 경쟁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 구제조치 부과 등의 측면에서 유럽의 규제 틀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CRC도 CRT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업자에 이행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 위치의 사업자가 기본설비로 간주되는 네트워크에 대하여 언변들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도 CRC로부터 부과된 의무이다. 결국 CRC는 모든 사업자에 '대칭적' 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고, 동시에 망 요소세분화 의무 또는 모바일 접속요금 규제 등 일부 사업자에만 해당되는 '비대칭적'

34) OECD(2013a), pp.38~39.

35) OECD(2013a), p.39.

36) OECD(2013a), p.40.

37) Decree 2870

구제 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³⁸⁾

2009년 CRC는 통신 분야 사전규제를 위한 관련시장의 개념을 정의하였고,³⁹⁾ 관련 시장에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⁴⁰⁾ 원칙적으로 규제는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자의적이지 않고 법에 근거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전규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시장의 목록도 수정 변경되어야 한다.⁴¹⁾

〈표 9〉 콜롬비아 규제 발전 연혁

연도	내용	법규
1993	모바일 확장 및 주파수 경매에 관한 규정 신설 - 3개의 지역 복점 구성(총 주파수 850MHz 폭에서 40MHz 배정)	Law 37 and Decree 741 of 1993
1994	유선전화시장 경쟁 개시, 지역 및 장거리 통화 제공을 위한 사업자 회계분리	Law 142 of 1994 (Law of Domiciliary Public Services)
1995	TV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제어 및 대역 관리 권한 부여(CNTV)	
1997	시장점유율 60% 이상 지역전신사업자의 소매요금 승인 권한 부여(CRT), 그 외 사업자의 소매요금은 자유화, 첫 번째 상호접속제도 신설(상호접속료는 이해관계자간 발생 및 처리)	CRT Resolution 087
1998	모바일네트워크 사업자의 허가제도 변경을 위한 법안 수정 - 주파수는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국가로 귀속	Law 422(amends Law 37 of 1993)
2000	제3 모바일통신 사업자 시장 진입 관련 변경	Law 555
2001	유선네트워크 상호접속료 부과 - 규제된 가격은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총 생산력의 2%)	CRT Resolution 463

38) OECD(2013a), pp.42~43.

39) Resolution 2058

40) Resolution 2062

41) OECD(2013a), pp.43~45.

연도	내용	법규
2002	상호접속제도 단일화 - 이해관계자는 30일 이내에 상호접속 조건 협의 필수(미 이행시 CRT 중재) - 상호접속료는 효율적비용 및 합리적수익을 기반으로 책정(기존사업자의 기회비용 고려)	CRT Resolution 469
2003	콜롬비아 3번째 모바일 사업자 시장 진입(Colombia Móvil)	Resolution 908 of 2003
2005	요금 재균형을 위한 법안 수정	Amendment of Resolution 087 of 1997
2007	모바일 및 전신중계회선 상호접속료 규제 개시(2007년까지 규제외 대상) - 비용모형을 통한 가격상한선 적용	CRT Resolution 1763
	통신서비스 사업자(TV사업자 제외)에게 융합 등록제 실시	Decree 2870 ("Convergence decree")
2009	Claro가 모바일음성서비스(발신)에 시장지배력이 있음을 선언	CRC Resolution 2058
	Claro의 온넷/오프넷 통화에 대한 규제 부과	CRC Resolutions 2066, 2067, 2171, and 2172
	CRT를 CRC로 변경, 모든 통신서비스사업자의 고유 등록 조건 신설	Law 1341(ICT Law, also known as the Convergence Law)
2010	주파수 2.5 GHz 대역을 UNE-EPM에 할당	MINTIC Resolutions 250, 469 and 833
2011	주파수 관리 및 전환에 대한 담당부서를 MINTIC에서 ANE로 이관	Decree-Law 4169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한 규정화	CRC Resolution 3066
	통신서비스의 서비스 품질 지수 신설	CRC Resolution 3067
	SMS와 MMS의 접속 조건 신설	CRC Resolution 3501
2012	Plan Vive Digital의 일환으로 광통신망 구축 입찰등록, TV Azteca 수주	No. 437 of 2011
	CNTV 해체 및 ANTV 신설	Law 1507
	Claro에 추가접속료 부과	CRC Resolution 4002
	이동전화단말기 할인 표준 제정	CRC Resolution 3530
2013	4G 주파수를 Avantel, DirecTV에 부여 허가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It vacates Law 422 of 1998 to extend reversion to network assets.)

자료: OECD(2013a)

(3) 상호접속 규제

통신 분야에서 상호접속 프레임워크는 시장경쟁 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양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적절한 상호접속 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상호접속 상품의 적절한 가격, 서비스 품질 등 비가격 요건, 예측가능성, 적절한 절차 등의 요건이 상호접속 규제의 검토 기준이다.⁴²⁾

2009 ICT법은 상호접속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다. 모든 통신사업자는 기본설비의 사용 및 접속, 네트워크에의 상호접속 요청을 수용해야 하며, 비차별, 투명성, 비용모델을 바탕으로 책정된 가격, 공정경쟁 증진, 지배력 남용 예방, 주어진 위치와 시간에 상호접속은 네트워크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다양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⁴³⁾

(4) 지배력 규제

CRC는 2012~2013년 동안 모바일분야에 대한 시장지배 상황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CRC는 2009년 Claro에 대한 시장지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소매 음성시장에 지배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전규제를 부과하였다.⁴⁴⁾ CRC는 자사간 통화(On-net)와 타사간 통화(Off-net)의 가격차이로 인해 가입자들이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변경하지 못하여 Clara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CRC는 Claro의 타사간 통화 요금이 자사간 요금보다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모바일접속료 규제를 시행하였으며,⁴⁵⁾ 2012년에는 규제를 개정하여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타사간 통화 요금이 자사간 통화 요금보다 비싸지 못하도록 규제를 시행하였다.⁴⁶⁾

규제당국은 모바일 시장의 경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낮은 모바일 접속료, 번호

42) OECD(2013a) p.45.

43) 2009 ICT법 제50조

44) Resolution 2062

45) Resolutions 2066 and 2071. OECD(2013a), p.51.

46) Resolutions 4002 and 4050, OECD(2013a), p.51.

이동 촉진 외에 주파수 상한,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정책을 사용하였다. 또한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국내로밍 정책을 사용하여, 이들이 국내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충분한 시장기반을 보유할 때까지 기존사업자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내로밍 정책이 무한 지속될 경우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CRC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만 로밍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CRC는 시장 내 2위, 3위 사업자인 Movistar와 Tigo에게는 수동적 네트워크 공유를 하도록 하여, MVNO들이 이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콜롬비아에는 이러한 MVNO가 6개 존재하며, ETB, Movil, Móvil Exito, UNE-EPM and Uff!는 Tigo의 네트워크를, Metrotel and Virgin는 Movistar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⁴⁷⁾

무선시장과는 다르게 유선시장은 상대적으로 CRC의 규제가 강하지 않았다. 2009년 CRC는 유선시장에 대한 규제가 없는 이유로, 모바일 통화 서비스가 대체재에 가까워 유선 전화에 대한 가격압박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CRC는 유선과 모바일 음성 통화에는 한쪽방향으로의 대응가능성 밖에 없으며, 이론적인 독점사업자는 고객이 모바일 서비스로 이동해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⁴⁸⁾ 그 결과 유선 전화 시장은 유선에서 모바일로 가는 통화에 대한 가격상한제⁴⁹⁾를 제외하고는 규제가 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

한편, 유선 브로드밴드는 유선 전화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유선 브로드밴드 국내 시장은 3개의 사업자가 균등히 시장점유율을 나눠갖고 있다. 그러나 유선 브로드밴드 사업자는 대부분 지역기반 업체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대한 경쟁강도에 대한 정보는 주지 못하고 있다.⁵⁰⁾

47) OECD(2013a), p.53.

48) Resolution 2063, OECD(2013a), p.53.

49) Resolutions 1250 of 2005 and 3497 of 2011. OECD(2013a), pp.53~54.

50) OECD(2013a), pp.54~55.

〈표 10〉 지자체 규모별 평균 HHI

지자체규모	평균 HHI 지수 [주거용 인터넷] (2010년 말 기준)	평균 HHI 지수 [주거용 인터넷] (2012년 말 기준)	지자체규모	평균 HHI 지수 [기업용 인터넷] (2010년 말 기준)	평균 HHI 지수 [기업용 인터넷] (2012년 말 기준)
			20,000명 이하	9,515	8,446
180,000명 이하	9,230	8,904	20,000~290,000명	8,578	6,935
180,000~930,000명	5,571	4,714	290,000~930,000명	5,534	3,938
930,000명 이상	4,549	4,267	930,000명 이상	5,387	4,533

CRC에서 제공한 허핀달 허쉬만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통계 분석을 보면 지자체 규모가 작을수록 시장집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⁵¹⁾ 다시 말해, 지자체 규모가 작을수록 경쟁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경쟁하였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가 도태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2개의 지역사업자가 존재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독과점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10년 CRC는 도매 브로드밴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브로드밴드 시장은 Resolution 2058에 의한 사전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CRC는 경쟁시장 기준을 기존 HHI 3,000에서 HHI 7,500으로 올려, 새로운 기준점 이하는 경쟁시장으로 결론내렸다. 그리고 브로드밴드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⁵²⁾

결국, CRC의 이러한 규제는 콜로비아의 유선 브로드밴드 가격이 OECD 국가 및 지역에 비하여 높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51) 통상적으로 HHI값이 1,000 이하면 완전경쟁시장, HHI 값이 1,000~1,800이면 경쟁적시장, 1,800~4,000 사이면 과점시장, 4,000 이상이면 독점적 시장으로 본다.

52) OECD(2013a), pp.54~55.

3. 경쟁정책

콜롬비아의 경쟁 정책은 SIC가 담당하고 있다. SIC는 경쟁증진을 위한 정책 형성 등에 관해 정부에 자문을 구하는 책임을 지고 경쟁 보호를 위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1991년 헌법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의 권한을 명시하고, 1992년 Decree에서는 SIC에게 반경쟁행위 조사 및 벌금 부과 권한을 부여하였다. 2009년 이전까지 경쟁 관련 기관은 분산되어 SDPS(Superintendencia de Servicios Pulicos Domiciliarios)는 유선을 담당하였고, SIC는 무선을 관장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관의 다양한 제재 권한은 행정적 비효율성, 관할 권한의 범위 혼돈, 법적 예측가능성 저하, 경쟁법 해석에 대한 단일한 사법기관 부존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에 2009년 ICT법은 통신 분야 경쟁정책의 권한을 SIC로 단일화하였다. 즉, 모든 통신서비스의 경쟁정책이 SIC의 권한범위 하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2009년 ICT법은 SIC가 자유로운 경쟁의 영향과 관련한 규정을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12~13년 모바일 시장의 점유율 제한을 30%로 설정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상원에서 거부되어 통과되지 못했지만, 그 논리적 정당성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⁵³⁾

4. 인프라 구축

콜롬비아는 CRC와 MINTIC가 통신 인프라 구축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로설비포설권(rights of way, RoW)과 관련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RoW 관련 규정은 의무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CRC에서는 지자체에서의 동 규정의 시행 경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규정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RoW는 전세계적으로 인프라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콜롬비아 정부 역시 인프라 확장을 위하여 RoW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및 OECD 회원국 역시 과거 광통신망 구축 초창기부터 RoW 관련 규정을

53) OECD(2013a), pp.59~60.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⁵⁴⁾

콜롬비아에서는 2008년 모든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공유해야 하는 규제안을 시행하였으며,⁵⁵⁾ 이와 더불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관로(ducts) 설치에 있어 30%의 여유분을 필수로 보유하도록 하였다.⁵⁶⁾ 이러한 규제안은 2011년 이후 민간 인프라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이는 관로와 전주(Pole)에만 적용되고, 선로설비포설권, 타워, 에너지 공급 시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⁵⁷⁾ 이와 더불어 CRC는 2012년 건물내통신선공유규제안(RITEL) 초안을 공개하였다.⁵⁸⁾ 이에 따르면 전화, 인터넷 접속 및 케이블 서비스 공급 사업자와 건물 소유주에게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⁵⁹⁾ 2013년 6월에는 에너지 규제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모든 통신사업자가 인프라 구축 사업 중에 송전망의 관로와 전주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이용 가격 상한제를 두어 통신사업자들이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비용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2013년 3월에는 4G 주파수 경매에서 주파수를 낙찰받은 통신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수동적 공유를 실시해야하며, 지켜지지 않을 시 주파수 허가를 취소한다는 MINTIC의 결의안이 시행되었다.⁶⁰⁾ 이에 따라 4G 주파수 낙찰 통신사업자인 Tigo와 Movistar는 4G 네트워크 시설에 대한 수동적인 공유를 실시하였다. 또한 콜롬비아 규제당국은 수동적 공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능동적 공유의 형태인 국내모바일로밍에 대한 정책도 실시하였다.⁶¹⁾

54) OECD(2013a), p.64.

55) 네트워크 공유는 시행 주체에 따라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상업적인 네트워크 공유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당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공유임. 상업적인 전략 업무제휴는 2009년 텔레포니카(Telefonica)와 보다폰(Vodafone)이 유럽시장에서 인프라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사례가 대표적이고,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은 규제 당국의 주도로 네트워크 공유를 실시하고 있음. OECD(2013a) p.65.

56) Resolution CRC 2014

57) Resolution CRC 3101 of 2011

58) Resolution CRC 4262 of 2013, 2013. 7월

59) RITEL은 2014년 1월 1일부로 발효

60) Resolution 449

61) Resoulution CRC 4112 of 2013

콜롬비아 규제당국인 CRC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해요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규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통신사업자들이 유무선 통신인프라 투자에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⁶²⁾

한편, CRC는 유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포괄 범위 한계와 성능 미비를 극복하기 위해 모바일 네트워크의 투자 촉진 및 경쟁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콜롬비아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차세대네트워크(Next Generation Access, NGA) 투자는 인프라 구축의 장벽에 막혀 정체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⁶³⁾

따라서 현재 콜롬비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광통신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선 브로드밴드는 그 자체의 역할 외에도 모바일 네트워크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통신 시장이 발전된 일부 OECD 국가에서도 스마트폰 데이터 접속의 70~80%는 개인 유선망을 이용한 Wi-fi 접속으로 알려져 있다.⁶⁴⁾

그러나 NGA의 투자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거나 부유한 지역에는 투자가 편중되어 2개 이상의 NGA 네트워크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다른 지역은 그 반대로 NGA 투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구조분리⁶⁵⁾, 기능분리 및 운영분리⁶⁶⁾를 통해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도 NGA 추진 과정에서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CRC 주도로 위와 같은 구조적인 처방을 내릴 필요가 있다.⁶⁷⁾

62) OECD(2013a), pp.65~66.

63) OECD(2013a), p.66.

64) OECD(2013a), p.66.

65) 구조분리는 운영분리를 넘어 도매접속을 제공하는 지역 네트워크와 소매 서비스 부서의 소유권(ownership)의 분리

66) 기능분리(functional separation)와 운영분리(operational separation)는 지배 사업자의 네트워크 인프라 소매 서비스를 부서로부터의 분리하는 것을 의미

67) OECD(2013a), p.64.

5. 주파수 정책

최근 콜롬비아에는 주파수 관리 및 계획에 2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주파수의 관리와 계획을 담당할 규제기관인 ANE 신설이며, 둘째는 2013년부터 시장 지향적 접근 방식을 통한 주파수경매를 시행한 것이다.⁶⁸⁾

ANE는 2012년 콜롬비아 주파수 종합계획(PAME, Plan Maestro de Administración de Espectro)을 시행하면서 모든 주파수 대역을 검토하고, 주파수의 경제적·기술적 정책 목표를 고려하는 등 적절한 주파수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주파수 관리 절차 및 조직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을 시행하였다. 또한 ANE는 IMT 서비스에 주파수 405MHz 폭을 할당하였으며, 이 중 215MHz 폭을 최근 3년간 집중적으로 배정하면서 IMT 서비스 확대에 대한 정책적인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OECD 기준에서 볼 때, 콜롬비아의 통신 분야에 할당된 주파수는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고 있다.⁶⁹⁾

〈표 11〉 콜롬비아 주파수 경매 동향

연도	주파수대역	주파수 폭(MHz)	할당 양식
1993	850 MHz	50	경매
2002	1.9 GHz	30	경매
2004	1.9 GHz	30	직접 할당
2008	1.9 GHz	10	직접 할당
2009	1.9 GHz	20	직접 할당
2010	2.5 GHz	50	경매
2011	1.9 GHz	25	경매
2013	1.9 GHz, 1.7/2.1 GHz, 2.5 GHz	190	경매
2014(2015년초 예정)	700 MHz		경매

자료: DSTI/ICCP/CISP(2013)7

68) OECD(2013a), p.68.

69) OECD(2013a), p.68.

콜롬비아는 2010년까지 단 6번만 주파수 부여를 진행하고 허가 후 갱신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주파수 경매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몇몇 경매의 경우에는 심사할당 절차를 통해(“미인경연대회” 같이) 너무 많은 요구조건을 내세우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현재 보유중인 주파수 권리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고 갱신 비용 책정에 대한 명확한 절차도 갖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 들어 처음으로 실제 경쟁과정을 거친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2013년 경매는 2011년 후반에 시작되어 2013년에 끝났을 정도로 시장지향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확연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⁷⁰⁾

2013년에 있었던 4G 주파수 경매에서는 AWS(1.7/2.1GHz) 대역의 30MHz (2×15MHz)폭 3개 블록, 2.5GHz band대역의 주파수 분할방식 90MHz폭(3개 블록으로 구분)과 시분할방식 40MHz(1개 블록), 그리고 나머지 1.9GHz 대역 5MHz (2×2.5MHz) 1개 블록을 할당하였으며, 이중 시장지배사업자인 Comcel(Claro)는 AWS 블록에 대한 입찰 불가 및 2.5GHz 대역에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⁷¹⁾ 신규 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을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⁷²⁾

〈표 12〉 2013년 주파수 경매 현황

낙찰기업	주파수 대역	주파수 폭	낙찰가 (백만달러)	할당 태블릿 수	커버리지 (지자체 수)
Claro(Comcel)	2.5GHz	30MHz(open block)	62.2	309,630	660
DirecTV	2.5GHz	30MHz(open block) 40MHz(reserved block)	37.2 40.2	30,000	57
Avantel	AWS	30MHz(reserved block)	55.7	30,000	57
ETB-Tigo	AWS	30MHz(open block)	101.5	67,426	144
Movistar	AWS	30MHz(open block)	102.6	119,317	255
합계			399.4	556,373	

자료: OECD(2013a)

70) OECD(2013a), pp.68~69.

71) AWS에 비하여 2.5GHz는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많이 소요됨.

72) OECD(2013a), p.69.

2013년의 경매를 통해 2014년부터는 콜롬비아 통신시장에 6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주파수 폭을 균형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콜롬비아 규제당국의 목표인 시장경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⁷³⁾

〈표 13〉 주파수 보유 현황(2013년 7월 기준)

운영사업자	850 MHz 대역	1.9 GHz (PCS) 대역	1.7/2.1GHz (AWS) 대역	2.5 GHz 대역	총 주파수 폭 (MHz)
Claro	25	30		30	85
Movistar	25	30	30		85
Tigo		55	30		85
UNE				50	50
DirecTV				70	70
Avantel			30		30
합계(대역 당 MHz)	50	115	90	150	405

자료: OECD(2013b)

일반적으로 1GHz 이하 주파수 대역은 IMT 커버리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의 주파수 대역이며, 높은 대역과 결합하여 네트워크의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른바 ‘황금주파수’ 대역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통신인프라 확산을 목적으로 1G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을 IMT 서비스에 할당하기 위하여 698~806MHz 주파수 대역(UHF의 채널 52번~69번)을 모바일 통신 서비스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2012년 ANE는 디지털 대역의 확보 및 재정립을 위하여 기존의 디지털TV전환 계획보다 4년이나 앞당겨 새로운 디지털TV전환 계획을 수립하였다.⁷⁴⁾ ANE의 계획대로 새로운 디지털전환 계획이 이행되면 2014년 혹은 2015년까지 일부 블록을 제외한 주파수 변환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는 700MHz 주파수 대역을 IMT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

73) OECD(2013a), p.71.

74) Resolution 37

을 것으로 보인다.⁷⁵⁾

한편 콜롬비아에는 주파수에 대한 재거래, 즉 2차 거래 시장이 없고, 오로지 MINTIC의 사업자간 주파수 거래 승인을 통해 거래가 되고 있다.⁷⁶⁾ 그러나 콜롬비아 통신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자가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파수거래에 대하여 보다 유연한 체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콜롬비아 정부 역시 주파수 관리 및 계획에 유연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파수 시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⁷⁷⁾

6. 보편적 서비스

콜롬비아 헌법에는 통신서비스 접근은 권리이자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보편적 접근과 보편적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다. 보편적서비스의 개념정의와 관련 1999년 Decree 899에는 ‘모든 가구가 기본통신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명시하고 있다. 보편적접근은 합리적 거리에서 공중통신서비스네트워크(PSTN)에 접근가능한 능력으로 특정되며, 이는 기능적 측면에서 전송수단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이와 비교시 보편적 서비스는 합리적 가격으로 어떤 지리적 위치에 있는 사용자에게도 이용 가능한 최소한의 서비스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⁷⁸⁾ Law 143 of 1994 및 Decree 899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보편적서비스 의무는 유선전화에 한정된다. 동 의무는 법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가능하며, 정책 이행의 책임기관은 MINTIC이다.

콜롬비아의 보편적 서비스를 지지하고 있는 기제는 교차보조(cross-subsidies)가 있다. 이는 콜롬비아 인구 중 저소득 계층을 위한 공공 유틸리티에의 접근을 촉진할 목적이며, 통신서비스는 유선, 연결 및 사용 요금, 유선 유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⁷⁹⁾

75) OECD(2013a), pp.71~72.

76) ICT Law, Article 11

77) OECD(2013a), p.72.

78) OECD(2013a), p.73.

보편적서비스 시스템은 역사적으로 소득 상위 계층이 더 많이 지불하여 저소득 계층에 보조해주는 ‘기여 체계’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역, 가구, 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에게 부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균형적인 체계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6개의 계층 중 저소득 3계층은 계층별로 50%, 40%, 15%를 보조받고, 상위 2계층은 20%를 더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계층 시스템은 기업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⁸⁰⁾

<표 14> 콜롬비아 보편적서비스 계층시스템

계층	인구비중(%)	가구장 월 소득(달러)	할인/할증(%)
1(최저)	27%	< 330	-50%
2(저)	39%	330-660	-40%
3(저중)	22%	660-1,170	-15%
4(중)	7%	1,170-3,330	0
5(중상)	1%	>3,330	+20%
6(상)	1%		+20%

자료: OECD(2013a)

7. 외국인 투자 및 정부의 지분 보유

콜롬비아는 2007년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통신분야의 접근 및 사용 등 WTO 협정의 기본통신 서비스 원칙과 부합한 비차별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콜롬비아 국내법에 남아있던 외국인 투자 제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외자의 진입 장벽을 제거하였다.⁸¹⁾

그러나 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분 보유는 여전히 남아있다. 콜롬비아는 역사

79) OECD(2013a), pp.73~74.

80) OECD(2013a), p.73.

81) OECD(2013a), p.81, 강하연 외(2012) 참조.

적으로 장거리 전화 등 국내 유선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진입 및 경쟁이 있어왔기 때문에,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달리 독특한 국가 유선망 기존사업자가 존재한다. 이들은 지자체 및 지역의 유선 사업자들로 대부분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제1사업자인 Claro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주요 사업자들의 일정 지분이 정부에 속해 있다. 예를 들어, 보고타 및 메델린 정부는 2대 유선 사업자인 ETB, UNE-EPM의 상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모바일 분야 2위 및 3위 사업자인 Telefonica 및 Tigo의 일정 지분은 콜롬비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Colombia Telecomunicaciones의 30% 지분을 점유하고 있다.⁸²⁾ 또한 콜롬비아는 경쟁 중립성에 대한 공식 정책이 없으며 공공기관들은 상업적 활동에 대한 분리회계의 의무가 없다.

이러한 상황은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콜롬비아 유선시장의 발전 저해, 지역 전화시장에서의 시장집중화 현상 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8. 소비자 보호 및 권한 강화

콜롬비아는 ICT법이 촉발한 통신시장의 융합체제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 배경을 갖고 있다. 2009년 이전까지 콜롬비아는 계약, 서비스, 요금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의무가 규정상 존재했을 뿐 실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실행되지 않았다. 2007년 통신 소비자 보호 체계가 CRT 결의(Resolution CRT 1732 of 2007)에 의해 시작되었고, 2011년 ICT법(Resolution 3066 of 2011)에 의해 규정 이행의 기초가 다져졌다. 동 규정은 통신서비스 소비자와 관련 ‘소비자 헌장’(Estatuto del consumidor)으로 불리는 Law 1480 of 2011을 이행하고 있다.⁸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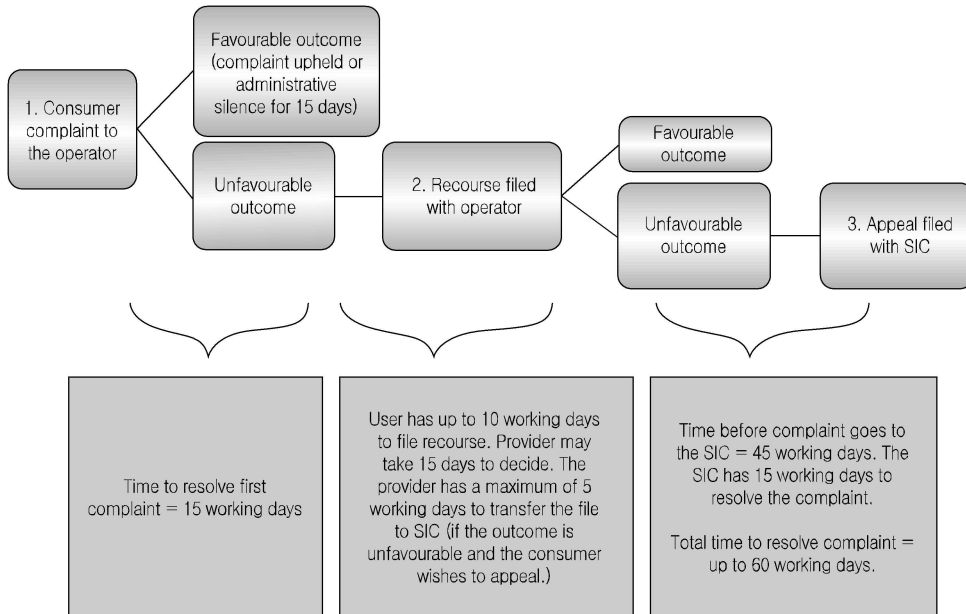
콜롬비아의 소비자 보호는 2개의 기관이 책임지고 있는 체계이다. CRC는 사용자의 사회복지 최대화를 목적으로 규정을 입안하고 있고, SIC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decree 4886 of 2011)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규정과 집행의 분리’라는 이

82) OECD(2013a), pp.81~82.

83) OECD(2013a), p.82.

중적 접근은 ‘소비자의 혜택 극대화 및 계약상 보호’라는 보완적 결과 및 시스템을 가져왔다. 동시에 이로 인해 기관간 조정 및 소비자의 부담 증대라는 문제도 발생한다.⁸⁴⁾

[그림 5] 콜롬비아의 소비자 소 제기 절차



자료: OECD(2013a)

한편, Resolution 3066 of 2011은 소비자의 불만 및 소 제기의 절차적 투명성 및 계약상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ICT 법은 소비자의 소 제기에 대한 사업자의 답변 기간, 소비자의 소 제기 요건 및 예외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그림에서 처럼 콜롬비아는 소 소비자의 소송 제기와 원만한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의 절차, 사업자의 결정과 청구를 위한 절차, 그리고 SIC의 분쟁해결 절차까지 투명한 절차를 갖추고 있지만, 분쟁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60일 이상이 되는 등 기간이 길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⁸⁵⁾

84) OECD(2013a), p.83.

융합 환경에서 기인하는 주요 문제인 투명성과 소비자의 잠금효과(lock-in)에 대해, 콜롬비아는 결합서비스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가격 분리 조건을 둠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다.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는 CUN (Unique Number code,Codigo Unico Numerico)으로, 소비자의 소송 제기를 SIC의 웹사이트를 통해 추적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 제기의 부담 경감 및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다.⁸⁶⁾ 단, 융합 환경 하에서 경쟁 담당 기관이 ANTV 및 SIC로 이원화되어 있어 소 제기의 어려움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9. 기타 정책이슈

(1) 융합 관련법

서비스의 융합 현상 증대로 인해 규제 틀에도 일관된 조치와 단일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다. 융합규제 틀에 대한 콜롬비아의 최초 시도는 2007년 Decree 2870에서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융합’ 라이선스를 허락한 것이었다. 더불어 규제기관이 사업자들에게 해저케이블, 가입자 망 등 기본설비 접속과 관련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⁸⁷⁾

주목할 만한 점은 앞서 설명했듯이 ICT 법으로 인해 모든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공시 ‘등록’만을 요건으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서비스에 대해 개별 라이선스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융합의 규제 틀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기존에 요구했던 공급 요건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진입을 간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 망중립성

콜롬비아는 미국과 유사한 망중립성 원칙을 갖고 있다. 2009년 ICT법은 사용자들의 선택에 따른 서비스와 콘텐츠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망중립성 원칙을 수립하였다.

85) OECD(2013a), p.84.

86) OECD(2013a), pp.84~85.

87) OECD(2013a), pp.61~62.

Resolution CRC 3502 of 2011은 CRT 1740 of 2007이 수립한 원칙을 발전시켜 ‘자유로운 선택, 비차별, 투명성, 무료 정보’ 등 미국의 FCC와 유사한 유선 ISP를 위한 망중립성 원칙을 채택하였다. 또한 CRC 결의는 2가지 핵심사항을 포함시켰다. 즉, 인터넷 접속을 위한 QoS 수준을 세워 망중립성 관련 적절한 요건을 보장하였고, 보안 문제로 인해 콘텐츠 차단을 위한 명확한 요건을 수립하였다.⁸⁸⁾

콜롬비아 정부는 법규상 망중립성 원칙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관행상 담당기관이 동 원칙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IV. 콜롬비아 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OECD 평가

1. 콜롬비아 통신 발전 및 정책 평가⁸⁹⁾

콜롬비아의 통신 정책 및 규제의 강점은 자유화와 효율적인 경쟁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최근 상당한 개혁의 진전을 이뤘다는 점이다.⁹⁰⁾ 콜롬비아는 시장의 구성원이 효율적인 경쟁 환경에 놓여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OECD 국가의 통신 규제 도구를 제도 내에서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

경쟁 이슈와 관련하여 소비자 및 경쟁 담당기관과 통신 규제기관의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규제 당국간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당국 간의 협업은 사업자가 경쟁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장 신규진입자에게 등록만 하면 부여되는 고유 라이선스(Unique licensing) 제도를 채택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 활성화 및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파수 할당 절차 등 주파수 관리에 수년간 존재하던 문제점들을 효율적

88) OECD(2013a), p.93.

89) OECD(2013a), pp.95~99.

90) CRC의 최소시간조항(Minimum-time Clause) 폐지, 회계분리 의무 강화 실시

이고 투명한 시장 기반 메커니즘을 채택하여 해결하였고, 2010년부터 주파수 경매를 시작하여, 주파수경매 제도를 발전시킨 결과 2013년에는 4G 주파수 경매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콜롬비아 법원은 통신 규제당국이 채택한 높은 투명성 기준을 인정하고, 주요한 규제 결정이 변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모든 규제를 제거하여 외국 사업자가 100%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 분야에 기술, 전문지식, 새로운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⁹¹⁾

한편, 콜롬비아의 통신 정책 및 규제의 약점은 강점에 비하여 적은 수준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가장 주요한 약점은 독립 규제기관의 부재이다. 콜롬비아 ICT 장관은 CRC 이사회의 의장이며, 이는 정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책 및 규제의 연속성에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MINTIC은 정책 담당 부처이지만 주파수 경매 및 제재 부과 등 규제 기능을 많이 갖고 있어 오히려 규제기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다. 경쟁 당국인 SIC의 상황도 유사하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어 정치적 영향에 취약하며 경쟁 증진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최근 3~4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동안 너무 많은 통신 정책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최상의 결과를 내려면 경험과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허가와 관련하여 최근 논의되는 네트워크 자산 반환 문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앞으로의 투자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무선망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콜롬비아 유선망의 낮은 보급률과 경쟁으로 인해, 추후 유선망을 이용하는 모바일 서비스(4G, Wi-fi) 등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음성, 데이터, 비디오 등의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융합에 모멘텀을 부여하기 위하여, TV 규제기관(ANTV)와 통신 규제당국(CRC)의 관련 기능을 병합한 기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소유한 유선 서비스 공급자들은 낮은 보급률과 성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의해 경쟁에서 보호받고 있어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⁹²⁾

91) OECD(2013a), pp.95~96.

92) OECD(2013a), pp.97~98.

〈표 15〉 콜롬비아 통신 규제 정책의 장단점

분야	장점	단점
규제기관 독립성	규제 절차 및 자원 관리 측면에서 높은 투명성 및 책임감	규제기관의 독립성 미약 및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함 CRC의 제재권한 미보유 및 MINTIC의 제재권한 미약으로 인해 사업자의 의무 준수 유인이 약함
기관 관계	다양한 규제기관 간 조율 및 명확한 업무 구분 규제결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보장되나, 규제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규제의 전달 및 이행 기관이 달라 규제이행의 효율성 떨어짐 방송규제와 통신규제 기관 개별 존재
사전규제	사전규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규정 존재	
외국인 투자 정부지분	외국인 투자 제한 완전 철폐	콜롬비아 정부 및 지방 정부의 통신사업자 지분 보유
경쟁	사전규제 적용 받지 않는 경쟁 이슈는 SIC의 2차 검토로 보완	경쟁 담당기관(SIC)의 독립성 취약
소비자보호	소비자 이익에 대한 존중	소제기 절차가 늦고 부담이 됨
가격		유선시장 및 주파수 경매 절차 시 교차보조 관행으로 인해 가격 차별 등 왜곡현상 존재
시장진입	다양한 서비스 공급에 대한 단일한 인가 절차 및 허가제도로 시장진입 촉진	투자 불확실성 존재, 라이선스 재발급의 어려움
상호접속	모바일 시장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문제 인식으로 인해 상호접속 이슈도 산업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구축. 규제기관의 상호접속 요율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	
주파수 할당	시장에 기반한 메커니즘을 통해 주파수 할당	
인프라	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이니셔티브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정부의 정치적 공약도 확고함	지방 정부의 광범위한 권한으로 인해 전체적인 인프라 배치에 장벽

자료: OECD(2014) 재정리

2. 콜롬비아 통신규제에 대한 OECD의 권고사항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개선하는 규제 개혁의 노력은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유무선시장의 경쟁 강화는 혁신적인 서비스, 가격 인하, 보급률 증대 등의 형태로 소비자와 기업의 혜택을 증가시킨다. 특히, 콜롬비아의 초고속인터넷의 높은 가격과 소수 계층의 사용은 디지털 격차 및 소득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쟁이 요구된다. 경쟁 증가는 사업자로 하여금 인프라를 개선하고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유발한다. 이 같은 선순환 구조는 경제 전반에 확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990년대 OECD 회원국의 자유화 정책을 통한 경쟁 및 네트워크 개선 성공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콜롬비아의 유선사업자들은 현재의 정책 틀 안에서 상호 시장 진입 및 통합을 통해 경쟁을 확대시킬 수 있다.⁹³⁾ 특히, 케이블사업자들은 고급 콘텐츠를 제공하여 수요층을 확대하고 인프라 경쟁을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⁹⁴⁾ 한편, 독립규제기관의 규제 간소화 및 인센티브 제공은 경쟁과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지속성 보장, 투명성, 책임감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CRC에 더 많은 집행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급속한 융합 환경하에서 규제기관의 융합 및 융합된 규제가 필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ANTV 권한의 CRC 이양 및 규제기관 병합도 고려할 수 있다.

OECD는 콜롬비아의 통신 규제정책 및 발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 제도적 틀 및 규제 구조에 대한 권고사항

먼저,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통신 규제당국은 개혁을 통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되어야 하며, MINTIC의 직접적인 참석이나 CRC 이사회의 승인 없이도 독립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신 규제당국 수장의 임기를 최소

93) Telmex/Claro 및 UNE-EPM 사례

94) 유료TV 시장에서의 DirecTV 사례

5~6년으로 연장시켜 정책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통신 규제당국에 통신 규제 미준수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규제 미준수행위와 지침 이행의 지연에 대한 벌금은 충분히 높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⁹⁵⁾

다음으로 주파수에 관련한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MINTIC와 ANTV에게 부여된 주파수 관련 권한을 CRC로 이전하여 주파수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통신 규제당국에 주어져야 한다. 또한 CRC는 모바일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매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⁹⁶⁾

(2) 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에 대한 권고사항

유선시장 규제와 관련하여 CRC는 브로드밴드 시장에 도매 브로드밴드 접속, 언버들링 등 도매 의무를 통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유선 시장의 통합 기초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시장 규제와 관련, 통신 규제당국은 신규 진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높은 접속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유·무선 접속료를 한 단계 더 인하하여야 한다.⁹⁷⁾

더불어 CRC는 통신 사업자의 기능적 혹은 구조적 분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독과점 체제를 분리하여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자산 반환과 관련, 콜롬비아 법원과 규제 당국은 1994년 양해각서에 따른 네트워크 자산여부의 반환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피해만큼 절차에 따라서 보상해야 한다.⁹⁸⁾

(3) 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에 대한 권고사항

교차보조를 통한 계층화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서 발

95) OECD(2013a), pp.99~100.

96) OECD(2013a), p.101.

97) OECD(2013a), pp.103~104.

98) OECD(2013a), pp.104~105.

생한 소비자 잉여는 운영자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 계층 혹은 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정부가 직접 보전해야 한다. 통신서비스 과세와 관련해서는 콜롬비아는 사치세 명목으로 통신 분야에 추가적인 부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보편적 서비스 이슈와 관련해서는 MINTIC는 DNP와 함께 현재의 보편적 서비스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⁹⁹⁾

(4) 인프라 구축 장벽 제거에 대한 권고사항

인프라 구축과 관련, 해당 규제당국은 법적, 행정적 장벽을 제거하여 인프라 배치를 촉진해야 한다. 지자체의 도시계획 규정이 저마다 다르게 마련되어 있어 그 조화가 필요하고, 지자체의 통신 인프라 구축 시, 지연 또는 중단되지 않도록 네트워크 구축 허가 부여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시간계획, 관련 행정절차 손질 등이 요구된다.

서비스 품질과 관련, 규제당국은 높은 투명성 기준 개선을 위해 사전규제를 부과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QoS 기준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사업자간 비교 가능한 QoS 지표가 정기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¹⁰⁰⁾

(5) 소비자 이익 증진에 대한 권고사항

소비자의 불만 처리과정은 더욱 신속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안의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단말기 구입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통합요금제를 포함한 단말기 구입에 있어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월 사용료와 단말기 가격을 구분하여 공지해야 하며, 통신사에서 할인되는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번호 이동에 대해서는 통신 규제당국은 유선 번호 이동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번호 이동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¹⁰¹⁾

마지막으로 국제 모바일 로밍에 대해 콜롬비아 통신 규제당국은 로밍 서비스의 투

99) OECD(2013a), pp.105~106.

100) OECD(2013a), pp.107~108.

101) OECD(2013a), pp.108~109.

명성을 향상 시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요금 충격(bill-shock)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콜롬비아는 OECD의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권고안에 따라 로밍서비스의 도·소매가격 규제를 포함한 각종 조치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¹⁰²⁾

V. 결 론: 정책적 시사점

본 고에서는 콜롬비아의 OECD 가입 절차를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콜롬비아의 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OECD의 검토 내용 및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콜롬비아가 보유한 정책적 강점 및 개선노력, 그리고 규제체계의 제도화 과정에서 볼수 있는 한계점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규제기관의 규제 절차상 투명성과 규제기관 간의 적절한 조율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규제기관의 독립성 부족, 정치적 영향에의 취약성, 제재권한 미약 등으로 인해 긍정적 효과가 반감되고 오히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제한의 철폐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경쟁이 보장되고 있으나, 역사적 잔재로 남아 있는 정부의 지분 보유 현상은 시장진입자들에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진입 간소화 정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공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라이선스 재발급의 어려움과 투자의 불확실성 문제가 개선의 여지로 남아있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시장지배력에 대한 문제 인식을 통해 상호접속 요율 인하, 지배력 남용 예방 조치 등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상호접속 의무 및 시장에 기반한 주파수 할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바일 부문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의문 부호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주파수 경매 시 교차보조 관행으로 인해 가격의 왜곡현상이 존재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통신 인프라 구축 및 배치와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과 이행 의지는 공고하지만, 지방 정부의 광범위한 권한은 국가

102) OECD(2013a), pp.109~110.

적인 인프라 확보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통신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은 OECD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추진되는 절차이지만, 우리나라는 OECD의 기존 가입국으로서 그리고 FTA 체결상 대국으로서 콜롬비아의 정책 개선과 한계점에 대해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콜롬비아 규제체제의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안인 규제기관의 독립성 및 정치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규제체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방송과 통신 분야의 규제기관이 분리, 통합 등을 순환적으로 거치면서 독립성이 약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주요 선진국들이 단일한 규제기관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동일하게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지만, 시스템의 지속성 차원에서 효율적인 규제 체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논의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콜롬비아는 외자제한 철폐, 융합서비스 제공 단일 라이선스 도입, 인프라 구축 및 상호접속 등에 철저한 경쟁 도입 등을 추구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와 비교하여 정책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FTA 협상 및 국제기구에서의 통상 측면의 시장 개방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질 것이 명확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점진적인 제한 완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통신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와의 균형을 고려한 개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FTA 체결을 완료한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콜롬비아에 시장개방의 추가 요구나 정책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는 양자 차원의 통로는 막혀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OECD에서의 가입 심사를 위한 정책 검토 절차를 통해 향후 다자 차원의 추가적인 정책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측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특히, 최근 FTA 비준에 있어 FTA 체결에 대한 콜롬비아 국내 사회적, 정치적 반응이 부정적인 점을 고려한다면,¹⁰³⁾ OECD의 동 작

103) 2014. 6. 18일 콜롬비아 하원이 한국과 FTA 비준 심의를 보류하며 한-콜 FTA 발효가 무산되었고, 하원의 비준 심의 보류로 콜롬비아 현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상원 비준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 KOTRA(2014)

업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현 가입 절차 및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지분 보유 완화 및 철폐 등 우리측 관심사항에 대한 최대한의 정책적 조치를 요구하고 변화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도에 명확한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 지원을 하고 있는 콜롬비아의 정책 추진력은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현재 700MHz대 주파수 대역을 두고 통신 및 방송 중 용도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콜롬비아의 정책이행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의 인프라 확산 정책들의 대부분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했던 정책들로서 추후 콜롬비아에 협력 사업 제안을 통해 시장기회를 창출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하연 외 (2012),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개방 및 규제제도 조사자료집, 2012. 12.

산업통산자원부 보도자료, ‘한·콜롬비아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 2014. 4. 30.
아시아투데이, ‘중국, 올해 구매력 기준 GDP 드디어 미국 넘을 전망’, 2014. 10. 10
일자.

KOTRA, ‘한국-콜롬비아 FTA 발효, 난항 속으로’, 2014. 6. 26.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

OECD 홈페이지(www.oecd.org)

FTA 홈페이지(www.fta.go.kr)

CRC 홈페이지(www.crc.com.gov.co)

MINTIC 홈페이지(www.mintic.gov.co)

OECD (2013a). Joint ICCP-WPCISP session: Review of Telecommunication Policy & Regulation in Colombia, DSTI/ICCP/CISP(2013)7, 2013. 11.

- OECD (2013b). QUESTIONS FOR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ICCP-INSTRUMENTS AND ANSWERS: Accession Review of the Russian Federation, DSTI/ICCP/ACS(2013)4, 2013. 11.
- _____ (2014a). Joint CDEP-WPSPDE session on Accession and Global Relations, DSTI/ICCP/ACS./A(2014)1, 2014. 5.
- _____ (2014b). Latvia Accession: Digital Economy Policy(Initial Memorandum), DSTI/ICCP/ACS/(2014)1, 2014. 4.
- _____ (2014c). Colombia Accession: Digital Economy Policy(Initial Memorandum), DSTI/ICCP/ACS/(2014)2, 2014. 4.
- _____ (2014d). Market Openness Review of Colombia, TAD./TC/ACS(2014)3, 2014. 10.
- _____ (2014e). Colombia's Replies to Delegates' Questions Regarding the Market Openness Review of Colombia, TAD/TC/ACS(2014)4, 2014. 10.
- _____ (2014f). Draft Agenda for the Joint Session on Accession and Global Relations, DSTI/ICCP/ACS/A(2014)2, 2014. 12.
- _____ (2014g). ENGAGING NON-MEMBERS IN THE 2016 MINISTERIAL ON THE DIGITAL ECONOMY, DSTI/ICCP(2014)22, 2014. 12.
- _____ (2014h). REVIEW OF THE CDEP GLOBAL RELATIONS STRATEGY AND PARTICIPATION PLAN, DSTI/ICCP/ACS(2014)7, 2014. 6.